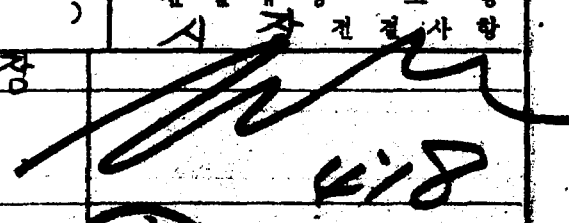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교통2038~105/2 (전화번호)			건설규정 시	조항 건설사항
처리기간	부시참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국장				
	부국장				
	과장				
기안책임자	정장김형해			조	
경유	수신	참조	발신	시	통제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고시 제정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고시 제 116 호</b> </div>	
도로교통법 제44조 7항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운전자 준수사항을 고시로 제정 실시코저 합니다					
					정서
					판인
					발송

# 제 장 이 유

도로 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제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케 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코자 함

고시안심사	1972. 4. 20	제 170 호
심사자	법제국장	법무, <del>사법</del>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자동차 운전~~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고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장

1.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여객에 관한~~ 합승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정된 요금  
(미터기에 의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  
하거나 징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

없이 자동차 우수사업법 제57조 제58조  
의 유상 운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